

4) 절초동맹(折草同盟)

순천농민운동에서 특기할 만한 사건은 절초동맹과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의 산림령은 임야의 국유·사유를 불문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벌채를 금하였는데, 이는 활엽수의 부산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사용해온 농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었다. 순천농민대회연합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비 조성을 목적으로 한 산림이용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절초동맹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자 했다. 그런데 당국은 이에 관련된 인물들을 체포하여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다음은 절초동맹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내용이다.

장국현과 박병두는 순천농민대회 임시총회에서, 근래 행정당국이 삼림보호를 명목으로 녹비(綠肥)의 채취를 금지하고 금비(金肥)의 사용을 권유하는 것은, 부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은 금비 구입의 자금이 없어 녹비의 채취를 허가받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고, 절초동맹을 조직하여 군수에 교섭하여 녹비 채취의 허가를 받자고 제의하여, 회원들의 찬성을 얻어 절초동맹 창립총회 개최 및 입회금의 징수를 결의했다. 교섭위원으로 선정된 장국현·김동섭(金東燮)·박인화(朴仁華)는 군수 오석유(吳錫裕)를 만나 국유·사유의 산림에서 활엽수 벌채의 양해를 구하였으나 군수의 허가를 얻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군수의 목인을 얻은 것처럼 허위로 선전하는 한편 절초동맹을 조직하고 입회금을 징수하여 이를 편취(騙取)할 것을 기도했다.

이들은 박병두로 하여금 절초동맹 창립총회에 관한 선전문을 작성케 하여 배포하고 이창수로 하여금 회칙을 기안토록 했다. 절초동맹 창립총회에서 장국현은 국유지는 물론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도 활엽수를 채취할 수 있도록 군수가 목인했다고 보고하여 사람들의 오해를 일으키는 한편, 회원이 아니면 절초를 할 수 없게 하고 입회금은 30전으로 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도했다. 장국현은 절초동맹의 간사장이 되어 회원증의 발급을 총괄하고 각 면 각 리에 간사를 두어 이를 분임케 하였으며, 292명으로부터 입회금 합계 87원 60전을 받고 조구모(趙九模)·정기준(鄭基準)·김기영(金基泳) 외 수명의 손을 거쳐 522명으로부터 입회금 합계 156원 30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騙取)했다.¹⁾

위의 사람들 가운데 항소까지 한 결과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된 장국현을 제외하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체포되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개월간 구금되었으므로 농민운동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앞서 말한 김익두의 보안법 위반 사건, 김기수의 상해사건과 병합된 사건으로서 1924년 농민운동 지도부에 대한 대규모 탄압의 일환이었다.

절초동맹의 조직 시도는 이처럼 실패로 돌아갔으며, 비료의 채취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농민들의 관심사로 남게 되었다. 농민회는 그뒤에도 당국과 이 문제를 둘러싼 교섭을 부단히 시도하였으나 양해를 얻었다는 기록은 없다.²⁾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1924년 豫第8號 ; 광주지방법원 1924년 刑公 第689號 ; 大邱覆審法院

1925년 刑控 第137號. 이상 정부기록보존소 마이크로필름 22237.

2) 『동아일보』 1929. 5. 10.